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59
----------	-----

2021. 10.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용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지원신청 및 지원 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민법」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¹⁾)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²⁾ 본문)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³⁾ 제1, 2항)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음.

1)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한편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이에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은, 조례가 가지는 고유한 명칭으로서 그 조례의 규정과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
 - “부모빚”이란 부모의 사망 이전 채무를 의미하고 “대물림”이란 사물이나 가업 따위를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 주어 자손이 그것을 이어 나간다는 의미임.
 - 또한, 또한 부모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된 이후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 법률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제명에 “법률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타당함.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 타 법령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본 조례안에서는 「민법」상 미성년의 연령을 지원대상 기준 연령으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광주, 경기, 전남 등도 지원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 법령상 청소년 연령 정의

법 른	청소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성인: 19세 이상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규정한 것으로 문구상 문제는 없으나, 대상자 발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시·군에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⁴⁾에 대하여 소개하고, 피상속인 중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방법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제3항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민법」 제932조제1항⁵⁾에 따른 것임.
 -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하여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청소년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

4)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상속인 또는 후견인)가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인터넷,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5)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안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민법」 상 상속 관련 법률행위

법률행위 (민법)	법률효과	절차
단순승인 (제101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위 기간 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한정승인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위 기간 내 한정승인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법률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유관 기관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 또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청소년(19세 미만)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지원을 규정하여,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 결과로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행부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9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발의자 :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오영탁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지원신청 및 지원 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104호
- 다. 협의 : 여성가족정책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도 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붙임 관련 증빙서류 1부.

20 . . .

신청인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발굴 및 홍보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관련 법률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 지원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에 소요되는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3조의2(도지사의 책무)
- 안 제7조(비용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 미반영
 - 지원비용 : 1인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송달료 30,600원, 인지대 5,000원, 신문광고비 165,000원, 수입료 300,000원 적용
 - 지원인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 7월 ~ '21. 5월 지원 인원 (24명)과 도내 시군 수를 고려하여 연간 10명 적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산출기초	비고
홍보비	18,200천원	· 리플릿 400원×4,000개 = 1,600 · 포스터 4천원× 400개 = 1,600 · 홍보물품 5천원×3,000개 = 15,000	
지원비용	5,000천원	500천원×10명 = 5,000	

- 추계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16,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국비							0
도비							0
세 출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116,000
홍보비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지원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11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116,000
	세외수입						